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07
------------	-------

발의연월일 : 2018. 12. 24.

발 의 자 : 오제세 · 기동민 · 권칠승

전혜숙 · 이찬열 · 박덕흠

강병원 · 이후삼 · 이명수

유동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09-'17)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음.

그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정 및 지원”을 “육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정 및 지원”을 “육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무총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제34조부터 제3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을 받은 자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7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③ • ④ (생략)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⑥ ~ ⑧ (생 략)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②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행정
기관의 차관, 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③ • ④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3) _____

_____.

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3조(별 칙 적용시의 공무원의 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별 칙

제34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입주 승인을 받은 자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